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출가스 관련 성능 저하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등〉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5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배출가스 관련 성능 저하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등	3
※ 참고자료	12
1.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1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7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车主들이 요소수 구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 나.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5호의2).
-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Ⅲ. 검토의견

1. 배출가스 관련 성능 저하 제품의 수입·판매 금지 등

개정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u>자동차</u> 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① ----- ----- <u>자동차 및 건설기계</u> ----- ----- ----- ----- ----- ----- ----- ----- ----- ----- -----
1. ~ 3.(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관련 제품을 판매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구매 대행 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 ----- ----- -----.
1. ~ 4의3. (생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5. <u>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u>	5. <u>제57조의2제1항을</u> ----- ----- ----- -----

현행	개정안
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u><신 설></u> 6. ~ 13.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u><신 설></u> <u>1의4. ~ 1의5.</u> (생략) 2. ~ 3. (생략) ② ~ ⑥ (생략)	----- ----- ----- <u>5의2.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u> 6.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u> <u>1의5. ~ 1의6.</u> (현행 제1호의4 및 제1호의5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서는 배출가스 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²⁾을 탈거·훼손·변경·임의 설정하거나 요소수³⁾ 등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이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⁴⁾되어 중·대형 건설기계에도 SCR(선택적환원촉매장치)⁵⁾ 등 배출가스 전환장치(Exhaust Gas Conversion System)를 설치하고, 환원제로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1) 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2) (참고자료 1)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3) 요소수: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물질(질소, 물)로 분해하기 위한 환원제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이 장착된 경유차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며, 차량 내 요소수 고갈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 운행 중단 가능
 - $4\text{NO} + 2\text{CO}(\text{NH}_2)_2 (\text{요소수}) + \text{O}_2 \rightarrow 4\text{N}_2 + 2\text{CO}_2 + 4\text{H}_2\text{O}$

4) EU Stage-5 기준에 준하도록 변경('20.12.1.이후 적용, 환경부)

5)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NOx)과 요소수($\text{Na}(\text{CO}_2)_2$)를 분사하고 촉매층을 통과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변경]

시행일		2015년 1월 1일 이후(Tier-4)				2020년 12월 1일 이후(EU Stage-5)					
구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원동기출력범위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0.4g/kWh 이하	8.0g/kWh 이하	7.5g/kWh이하		0.4g/kWh 이하	—	—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0.4g/kWh 이하	6.6g/kWh 이하	7.5g/kWh이하		0.4g/kWh 이하	—	—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4.7g/kWh이하		0.03g/kWh 이하	5.0g/kWh 이하	4.7g/kWh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0.03g/kWh 이하	5.0g/kWh 이하	4.7g/kWh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출처: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일부 발췌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도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⁶⁾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6)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 중인 추세를 고려할 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금지 의무를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또한,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소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사례⁷⁾등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수입·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7) “요소수 조작 장치 ‘알리서’ 사면 합법?... 환경부 제도 개선 나서”, KBS뉴스, 24.3.8.



금강종합기술

새로운 트럭 ADBLUE 에멀레이터 8 IN 1 NOX 센서가있

35,100원

해외배송 상품으로 배송기간 1주 소요

구매 - 무료배송

스마일카드 최대 2% 캐시 적립

카드무이자 카드추가혜택

최대구매수량 5개

인증정보

원산지 · 상세설명 참조

스마일카드

옵션선택

기본

언어:영어

트럭 Adblueobd2 에멀레이터 8-in-1 설명:

트럭 Adblueobd2 에멀레이터 상자는 차량의 Adblueobd2 시스템의 좋은 작동 전자 모듈을 우회합니다. Adblueobd2 에멀레이터 상자를 Adblueobd2 시스템이 장착된 모든 트럭 또는 버스에 매우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즉시 Adblueobd2 시스템을 무시하며 Adblueobd2 액체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Adblueobd2 에멀레이터 박스는 Adblueobd2 시스템 전자 장치를 부드럽게 비활성화하므로 엔진의 전력 손실이나 대시 보드 및 진단 시스템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패키지 목록:

NOX 센서 에멀레이션이있는 1 pc x Adblueobd2 에멀레이터

모듈 프로그래밍 용 1 pc x 소프트웨어 (이메일 또는 cd로 보내기)

1 pc x 설치 지침 (이메일 또는 cd로 보내기)

이에 개정안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 중개·구매 대행 또한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수입·판매자와 중개·구매대행자의 제재 수준 비교]

주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수입·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
제재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91조제5호의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참고로, 현행법 제60조⁸⁾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미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판매 중개

- 8) 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자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 제57조제2항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수입·판매 중개·구매 대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뿐만 아니라 판매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수입·판매하는 행위’로 법 문언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⁹⁾에서도 수입과 판매를 함께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의 벌칙·과태료 조항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¹⁰⁾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9)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¹¹⁾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유통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구를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 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 11) **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

※ 참고자료

1.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19. 12.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장 치 별 구 분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1. 배출가스 전환장치 (Exhaust Gas Conversion System)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e, NOx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ive Heater)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 : EGR)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EGR 쿨러(Cooler)
3.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Evaporative Emission Control System)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 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 PCV)	PCV밸브
5. 2차공기분사장치 (Air Injection System)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6. 연료공급장치 (Fuel Metering System)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e Sensor), 기화기(Carburetor, Vaprizo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e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펌프(Fuel Pump), 공회전속도제어장치(Idle speed control system)
7. 점화장치 (Ignition System)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다만, 로터 및 캡 제외한다.
8.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n Board Diagnostics)	촉매 감시장치(Catalyst Monitor),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Heated Catalyste Monitor), 실화 감시장치(Misfire Monitor),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Evaporative System 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Secondary Air System)

	Monitor), 에어컨계통 감시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Refrigerant Monitor),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산소센서 감시장치(Oxygen Sensor Monitor),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Exhaust Gas Sensor Monitor),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Monitor),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Monitor), 서모스태트 감시장치(Thermostat Monitor),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Engine Cooling System Monitor),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Cold Start Emission Reduction Strategy Monitor), 가변 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Variable Valve Timing Monitor), 직접오존저감장치(Direct Ozone Reduction System Monitor), 기타 감시장치(Comprehensive Component Monitor)
9. 흡기장치 (Air Induction System)	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배관측로 밸브[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吸氣多岐管)

- 비고: 1. 위 표 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도 포함한다.
2. 위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가스켓(실), 와이어(하네서, 커넥터)와 위 표 부품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